

대전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가단1131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은

변론 종결 2023. 6. 20.

판결 선고 2023. 7. 1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500,234원과 그 중 28,500,145원에 대하여 2022. 1. 25.부터 2022. 5. 29.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30,836,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30,836,46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 1) 원고는 2020. 9. 25. 피고 A과 신용보증원금 19,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2021. 1. 25. 위 피고와 신용보증원금 9,5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 2)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원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 1)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은행 D출장소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 A은 2021. 10. 24. 위 대출금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신용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2. 1. 25. 위 은행에 28,910,0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22. 1. 25. 위 대위변제금 중 409,889원을 상환받아 원고의 대위변제금은 28,500,145원이 남아 있다.
- 2)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22. 1. 25.부터 현재까지 연 8%이고, 원고가 상환한 409,889원에 대하여 위 비율에 따라 계산한 1일분의 확정 지연손해금은 89원이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2021. 7. 20. 피고 B에게 자신 소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시가 70,077,000원인 춘천시 E 전 1,491㎡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1,142,27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C은행	30,000,000원
5,660,078원	
191,250원	
4,099,56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6,347,840원
2,168,570원	
동청주세무서	9,443,470원
양천세무서	5,266,840원
F조합	3,255,215원
G조합	20,033,520원
H은행	16,794,649원
I	30,024,473원
(주)J	12,092,622원
서민금융진흥원	2,443,805원
K카드	2,892,427원
L(주)	30,427,955원
합계금	181,142,274원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동청주세무서, 양천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F조합, G조합, H은행, I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28,500,234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28,500,14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2.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5. 29.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신용보증약정)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약 6개월 만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위 피고 직장가 가깝고, 피고 A이 위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매수한 것일 뿐이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신용상태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이종사촌 관계로서 피고 A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급매로 싸게 내놓았으니 사라고 하여 매수하였고, 피고 A의 신용상 문제로 매매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 B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액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20. 2. 14.자 근저당권자 C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80,436,12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위 근저당권이 변제로 모두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160,000,000원으로 보는 데에는 피고 B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그 당시 잔존하고 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가액은 79,563,880원(= 160,000,000원 - 80,436,120원)이고, 이는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 30,836,465원 [= 대위변제금 28,500,145원 + 확정손해금 89원 + 지연손해금 2,336,231원{28,500,145원 × 374일(대위변제일인 2022. 1. 25.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3. 2. 2.까지)/365일 × 연 8%, 계산결과원 미만 버림}]을 초과한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30,836,465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30,836,46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권세진

별지